

입소 이용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치매전문 살롱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치매전문 살롱요양원(이하 “요양원”을 한다)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요양원 이용자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2장 이용 및 계약

제 3조 (입소정원 및 대상자) ① 입소자의 정원은 100명으로 하며, 추후 사업의 확장 등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제 4조 (입소자모집) 요양원운영에 있어 입소자 모집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한다.

1. 홍보모집

방송 및 신문 등 지면매개체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블로거 등을 이용하여 정기홍보 및 수시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2. 참여모집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단체 모임의 참여, 협력병원의 자선활동 참여 및 시설과 연관 사업장 등의 대외행사 등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3. 관계기관 의뢰모집

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구청 관할내의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의뢰,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에서의 의뢰, 시설 및 사회봉사활동 단체에서의 추천 혹은 의뢰에 의한 경우 입소절차를 밟아 입소자를 모집한다.

4. 연계모집

다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근무자 지인 등에서 의뢰한 경우 및 사회복지기구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입소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5. 기타모집

위 각 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인소개 및 보호자의 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입소희망자를 모집한다.

제 5조 (입소절차) ①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요양원의 상담에 의해 입소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② 입소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2항에 기재된 서류를 기본으로 하되, 감염병이 발생할 시 감염병 검사 결과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염병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입소 후 약 1주 동안 1인실에 격리되어 생활하여야 한다(단, 감염병 관련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제 6조(급여계약 등) ①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7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 8조(퇴소) ① 원장은 시설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장 이용료

제 10조 (입소.이용료) ①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등급을 받아 요양원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금액에 의한다. (별첨4)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징수하도록 한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3. 이 · 미용비(자선봉사자 활동으로 무료이나 외부미용실이용시)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③ 비급여항목 등에 대해서는 요양원이용자 혹은 그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시행하거나 중단하도록 한다.
- ④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비급여비용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변경내용을 적용한다.
- 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한다.

항 목	내 역	비 용
식재료비	-간식 및 특식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치킨, 자장면, 피자, 햄버거, 죽 등과 같은 음식류는 본인이 구매. -시설은 실비로 구매를 대행하여 지급.	-실비구매
이`미용비	-시설 내 염색과 퍼머를 제외한 커트비용은 무료 -시설외부 미용실 및 미장원에서의 염색, 퍼머, 커트나 외부 미용사나 이용사의 초빙 비용은 실비.	-시설 내 커트비용 무료 -시설 내 초빙된 이`미용사의 염색 및 퍼머, 커트는 실비 -시설 외 염색, 퍼머, 커트 비용은 실비
수액 및 기타 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급되는 약품을 어르신에게 지급	-병원 및 약국에서 고시하는 실비
물티슈	-기본적인 물티슈는 필요에 따라 지급 -3일마다 1봉 이상 대량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실비로 구매하여 지급	-소량은 무상증정 -3일에 1봉 이상 대량 사용 시 실비로 구매지급
기저귀 및 패드	-월 이용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포함 -단 병원 입원 시에는 별도로 실비구매	-무료 -병원 입원시 실비구매
보장구	-대여를 원칙 -입소노인이나 보호자의 요구로 구매를 원할 시에 실비로 구매하여 지급.	-무료대여 및 실비구매

- 제 11조(이용료 납부 등)**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이용료 납부는 요양원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 12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용료의 변경 기준은 제10조 제1항을 따른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제4장 서비스 관리

제 13조 (서비스제공원칙, 서비스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요양원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다음의 원칙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1. 요양원이용자에 대해서는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 인간존중을 한다.
2. 요양원이용자에 대해서는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원이용자에 대해서는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4. 요양원이용자에 대한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요양원이용자에 대한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6.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요양원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유, 무료로 이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의료서비스

일상적인 건강 간호관리 및 교육, 전문간호(건강사정, 투약, 와상, 상처)관리, 촉탁의 정기진료를 통한 질환예방 및 치료서비스, 정기 예방접종관리, 합병증 예방관리 등

2. 물리치료서비스

신경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통증치료, 재활운동치료, 마사지치료 등

3. 일상생활 서비스

4. 영양식이 서비스

일반식, 유동식, 간식, 치료식 특별식 등의 제공서비스

5. 프로그램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음악치료, 운동치료 등

6. 취미활동 서비스

영화감상, 체조, 노래교실 등

제 14조(특별 보호서비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제공은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

간, 신체적 제한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3. 경관튜브 제거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4.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5. 기타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과 함께 이용자의 상태나 환경에 의하여 독신용침실의 사용이 필요한 아래의 경우 신청서 혹은 동의서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2.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잤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3.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아래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 혹은 그 보호자의 동의나 신청을 받아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 1인용 상급침실을 사용할 경우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비용
2.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 사용
3. 기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도록 정한 비급여항목 등

제 15조 (의료서비스의 처리절차) ① 요양원이용자의 건강증진과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한다.

② 촉탁의의 운영은 월 2회로 정기 및 수시 진찰을 실시하여 요양원이용자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이송하여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④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 응급실(건대병원, 충주의료원 등) 후송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어르신의 신병을 인계하도록 한다.

⑤ 어르신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 입원권유, 장기간 진료 등 의료기관의 입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진료비 및 교통 및 간병비용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이의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제 16조 (건강진단)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검진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등

제 17조(서비스제공의 배상 및 면책사항) ① 요양원장은 요양원종사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요양원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별첨5)

- ②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요양원종사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혹은 고의를 일으킨 종사자가 일차적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 ③ 요양원이용자가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한 비품, 장비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품을 요양원근무자에게 보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하다가 도난, 분실 등을 한 경우 요양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요양원이용자의 부주의 및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근무 종사자 및 시설, 시설부속물, 제반 장비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피해를 일으킨 요양원이용자가 모든 배상을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 ② 외출/외박시 기관 이동도구를 대여한 후 분실 및 파손시에는 변상한다.
- ③ 기관 시설물을 내 물건처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 (생활지도) ①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하며, 입소자의 원내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재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직원에 대한 복무규율 등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 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 20 조 (입퇴소 및 입소자의 권리의무생활규정) 입소자의 원만한 입퇴소와 그 권리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규정, 퇴소규정, 입소자 권리의무규정을 별도로 두도록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대표자의 재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